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1일

나. 발 의 자 : 한성희, 안주찬, 김태근, 김복자, 김인배
박세진, 안장환 의원 (7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2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한성희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의회의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함.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변경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함.
 - 숙박비(1야당) 46,000원을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조정함.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양 회 규

□ 본 개정조례안은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변경하여 구미시의회의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은

-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함.
 - 숙박비(1야당) 46,000원을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조정함.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변경하여 구미시의회의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